

# 충청북도검인계약제도실시에따른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1991. 12. 30.

내 무 위 원 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1년 12월 21일

○ 회부일자 : 1991년 12월 23일

다. 상정일자 : 제74회 정기회

○ 제6차 내무위원회(1991. 12월 27)상정

###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재무국장 유 의 재)

가. 제안이유

○ 적용시한이 만료됨(1991. 12. 31)에 따른 시한연장임

○ 목적 : 검인계약서제도 실시에 따른 과세와 관련한 국민생활의 안정지원

나. 주요골자

○ 부동산 등기시에 제출된 검인계약서중 개인간의 거래시 작성된 계약서에 의하여 과세되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불균일과세

○ 경감율 : 토지와 건축물의 계약서상 금액에서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40경감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전문위원 민귀식)

-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 또는 교환으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시장·군수의 검인을 받은용지에 의한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 이러한 제도의 실시로 인하여 국민의 급격한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간의 거래시 작성된 검인계약서에 의하여 과세되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경감시켜 주고 있으나 본 조례의 시행기간이 199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시행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지방세과세와 관련한 국민생활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검인계약서제도 실시에따른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를 개정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사항없음

5. 토 론 요 지 : 해당사항없음

6. 심 사 결 과 : 도 원안대로 의결(참석7인, 찬성7인)

7. 소수의견요지 : 해당사항없음

8. 기타필요한 사항 : 해당사항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검인계약서제도실시에따른도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